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연 근 해 어 업 의 구 조 개 선 및 지 원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어업구조개선사업의 범주에 현행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정치망 어업을 포함되도록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이 개정되어, 하위법령도 법률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는 근해어업의 감정평가 등 업무를 해양수산부가 직접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감척 대상 업종에 정치망어업 포함(제3조)

- 시·도지사에게 어선·어구 감척 신청하는 업종에 정치망어업 추가

나. 근해어업 감정평가 등 업무의 위탁 규정 마련(제10조)

-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어업인 근해어업의 감정평가 등 업무를 관리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마련

다. 법령용어 정비(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 투, 띄어쓰기 등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4. 5. ~ 5.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신청기간”을 “신청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을 “연안어업·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내용연수”를 “내용연수(耐用年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적지”를 “선적지(船積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7조 중 “의뢰에 관하여”를 “의뢰”로, “4)의 규정을”을 “4)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매각하여야”를 “매각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9조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따른”을 “따른 연안어업·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어업실태조사”를 “어업실태조사 업무

와 법 제18조에 따른 근해어업의 용역조사·감정평가 의뢰 및 현장조사
와 검증 등의”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어업실태조사의 항목 및 방법) ①·② (생략) ③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어업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u>보고하여야</u> 한다.	제2조(어업실태조사의 항목 및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보 <u>고해야</u>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어선·어구 감척 대상자의 선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어업자의 신청을 받아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나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1호에 따른 기간 개시일 1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제3조(어선·어구 감척 대상자의 선정) ① ----- ----- ----- ----- ----- ----- ----- ----- -----.
1. 어선·어구 감척 <u>신청기간</u>	1. ----- <u>신청 기간</u>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어선·어구 감척을 신청하려는 어업자는 해양	② ----- -----

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
부장관에게, 연안어업 및 구획
어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선·
어구를 우선 감척 대상으로 고
려하여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를 선정할 수 있다.

1. 선령(船齡)이 오래된 어선 및
내용연수 대비 사용연수가 오
래된 어구

2. ~ 4. (생략)

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어선
·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려
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
지사는 어업의 종류나 선적지
등이 같은 어선·어구의 어업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선·어
구를 우선 감척 대상으로 고려
하여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2. (생략)

----- 연안어업·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
----- 제출해야 -----.

③ -----

-----.

1. -----
내용연수(耐用年數) -----

2.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 선적지
(船積地) -----

-----.

1. 2.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감정평가 등)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의 의뢰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나목1) 및 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매입한 어선·어구의 처리)

① (생 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어선·어구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어구의 매입가격, 그 상태 및 매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매각되지 아니한 어선·어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⑥ (현행과 같음)

⑦ -----

-- 필요한 -----
-----.

제7조(감정평가 등) -----

---- 의뢰-----

----- 4)를 -----.

제8조(매입한 어선·어구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매각해야 ---
---.

③ ----- 않은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선
· 어구의 매각대금은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 편입되거
나 시·도 및 시·군·구(자치
구를 말한다)에 귀속된다.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매각대금의 수
산발전기금에의 편입 또는 시·
도 및 시·군·구에의 귀속 비
율, 그 밖에 어선·어구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어선·어구의 처리 승인)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선·어구의 처리
를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어선
·어구 처리계획서를 해양수산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임 및 위탁) ① 법 제21
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
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
한다)에게 각각 위임한다.

④ -----

말한다. 이하 같다--.

⑤ (현행과 같음)

⑥ -----

필요한 -----
-----.

제9조(어선·어구의 처리 승인) -

제출해야 -----.

제10조(위임 및 위탁) ① -----

-----.

1. 법 제18조에 <u>따른</u> 용역조사 · 감정평가 의뢰 및 현장조사와 검증 등 2. ~ 4. (생략) ② 법 제2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u>어업실태조사</u> 업무를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협회에 위탁한다.	1. ----- <u>따른 연안어업·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의</u> ----- 2. ~ 4. (현행과 같음) ② ----- ----- ----- <u>어업실태조사</u> <u>업무와 법 제18조에 따른 근해</u> <u>어업의 용역조사·감정평가 의</u> <u>뢰 및 현장조사와 검증 등의</u>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5517